
「202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자료

2021. 3.

1 | 12월 결산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대상) 2020년 12월 사업연도 종료 영리법인과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4.30.까지
- (신고) 홈택스를 통해 3.1.부터 전자신고 가능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납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1개월(4.30.),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 가능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 제공

편리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 (이용자 중심)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안내 자료 제공
 - 도움자료 성격별·중요도별 분류하여 중요정보 우선 제공
- (신고반영 여부) 주요 신고도움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파악토록 3년간 신고내역 추이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제공
 - * 신용카드 사용현황(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등), 지출증빙 수취현황
- (모바일 안내)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상으로 중요도 높은 신고 도움자료를 대표자 모바일로 직접 안내

도움자료 유형(Tab)별 안내 및 활용

<2021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 (주요안내)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조회 가능
 - 소득률 등 주요 경영지표를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 제공
-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등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참고토록 주주현황 추가 제공
- (기업분석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제공하는 화면
 - * 신변잡화구입, 개인적 치료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 * 지출증빙이 필요한 비용항목과 실제 지출증빙과의 차이금액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실시되는 주요 항목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줌
 -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사전 안내
 -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 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20년 40개→'21년 45개 항목)
- (절세 Tip)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 절세 Tip' 확충 제공('20년 25종→'21년 30종)
 - * (상가 임대 법인) →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내
- (세법 도우미) 최근 주요 개정세법 등*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 확대 제공('20년 84종→'21년 86종)
 - * (업무용승용차 보유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대손금 안내를 받는 법인) → 대손금 세법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오류 자동검증) 홈택스 신고 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확대* 제공('20년 18종→'21년 25종)
 - * 산출세액 환산오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등 7종 추가
- 특히, 최저한세율 잘못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은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 불가능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 18가지 유형 제공
- (비대면 자료 제공) 신고지원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3 | 경영상 어려운 법인 세정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청 시 피해여부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
- (지원내용) 3개월 이내 기한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 또한, 중소기업에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
- (전담대응반 운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 신속하게 세정지원
- (신청방법)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신청방법)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심사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 가능
 - (서면심사) 연구·인력개발 활동의 요건 적정여부, 지출비용이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서면심사 위주 검토
- (신청절차) 중소기업은 지방국세청, 일반·중견기업은 본청에서 사전심사 진행, 신속한 심사결과 제공 예정
- (혜택) 신고내용 확인 대상 제외,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

5 공익법인 신고서류 작성·제출

- (출연재산보고) 공익법인은 3.31.까지 결산서류 등을 제출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음
- (결산서류공시)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
- (작성요령안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영상으로 제공

6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

-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 (간편납부)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 가능
 - (국세계좌이체)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수납창구 운영, 신용카드로 납부

7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실시 계획
 - 또한,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 실시 예정
-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최대한 지원

참고자료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원가 과다계상

-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세액

- 8)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제외
- 9)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0)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1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고제

- 1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13)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14)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특수관계인 거래

- 15)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손익 귀속시기

16)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17)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부동산 양도차익

18)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19)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20) 주택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2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2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23)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24) 특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25)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합병·분할

26)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27)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시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비영리법인

2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30)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기타

3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3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불성실 작성
- 3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3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공제 부인
- 35)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